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6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 의 견 | 비 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제8-316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의의원 : 이성혁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1]
- 현행조례 : [별첨 2]
- 비용추계서 : [별첨 3]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 중 “따라”를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u></p> | <p><u>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u> <u>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u> <u>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u> |
| <p><u>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오산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u></p> | <p><u>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u> <u>-----</u> <u>-----</u> <u>-----</u> <u>---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u> <u>-----</u> <u>-----</u> <u>-----</u>.</p> |

[별첨 1]

관계법령발췌서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별첨 2]

현행 조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0년 4월 17일 조례 제17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이 정하고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오산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비용추계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안 제5조(지급대상)

2. 비용추계 전제

- 1) 안 제5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75명)와 제3호에 따른 영주권자(2,199명)에게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
- 2) 1회 한시적 지원경비로 1인당 100천원 지급을 전제로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1)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약 327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오산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 편성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액은 20,440백만원이고, 경기도 보조금 교부(예정)액이 2,271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2,711백만원임.
- 3)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사업비는 주민등록자 미신청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지출 가능하나, 주민등록자 미신청액은 추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4.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20년 3월말 기준 주민등록자 지급액(추정) : 약 22,711백만원

☞ 227,112명 × 100,000원 = 22,711,200,000원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 시 추가 소요액(추정) : 약 327백만원

☞ 3,274명(1,075명+2,199명) × 100,000원 = 327,400,000원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예산 확보액 : 22,711백만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 20,440백만원

☞ 경기도 보조금 교부(예정)액 : 2,271백만원

○ 부족액 : 약 327백만원

☞ 22,711백만원-(22,711백만원+327백만원) = -327백만원

※ 통계자료

(단위 : 명 / 3월말 기준)

| 합계 | 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중 | | 비고 | |
|---------|---------|---------|-------|-------|-------------------|
| | | 소계 | 결혼이민자 | | 영주권자 |
| 230,395 | 227,112 | 3,274 | 1,075 | 2,199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중복 제외 |

※ 2020년도 예비비 편성액(제2회 추가경정예산) : 6,080백만원

- 일반 : 4,300백만원, 재난재해목적 : 1,780백만원

5.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현황

(‘20.3.31 기준, 명)

| 시·군명 | 총 계 | F-5(영주) | | F-2-1 (국민의 배우자) | F-6 (결혼이민) |
|--------------|---------------|---------------|--------------------|--------------------|---------------|
| | | | F-5-2 (국민의 배우자) | | |
| 합 계 | 99,260 | 61,259 | 10,875 | 428 | 37,573 |
| 수 원 시 | 11,490 | 8,421 | 982 | 44 | 3,025 |
| 고 양 시 | 4,168 | 2,176 | 646 | 24 | 1,968 |
| 용 인 시 | 4,063 | 2,209 | 549 | 19 | 1,835 |
| 성 남 시 | 4,865 | 3,015 | 554 | 30 | 1,820 |
| 부 천 시 | 9,987 | 7,087 | 760 | 34 | 2,866 |
| 화 성 시 | 5,981 | 3,194 | 765 | 21 | 2,766 |
| 안 산 시 | 13,628 | 9,942 | 1,213 | 46 | 3,640 |
| 남양주시 | 2,166 | 802 | 422 | 11 | 1,353 |
| 안 양 시 | 2,697 | 1,743 | 248 | 19 | 935 |
| 평 택 시 | 5,003 | 2,722 | 511 | 22 | 2,259 |
| 시 흥 시 | 9,306 | 6,487 | 772 | 13 | 2,806 |
| 파 주 시 | 2,115 | 865 | 308 | 11 | 1,239 |
| 의정부시 | 1,606 | 695 | 245 | 21 | 890 |
| 김 포 시 | 2,913 | 1,432 | 292 | 7 | 1,474 |
| 광 주 시 | 2,254 | 1,101 | 295 | 8 | 1,145 |
| 광 명 시 | 2,207 | 1,499 | 230 | 9 | 699 |
| 군 포 시 | 2,437 | 1,653 | 267 | 4 | 780 |
| 하 남 시 | 694 | 250 | 102 | 6 | 438 |
| 오 산 시 | 3,274 | 2,199 | 321 | 3 | 1,072 |
| 양 주 시 | 1,183 | 457 | 183 | 11 | 715 |
| 이 천 시 | 1,099 | 524 | 204 | 7 | 568 |
| 구 리 시 | 603 | 287 | 127 | 6 | 310 |
| 안 성 시 | 1,604 | 877 | 186 | 13 | 714 |
| 포 천 시 | 1,177 | 508 | 178 | 12 | 657 |
| 의 왕 시 | 453 | 203 | 72 | 4 | 246 |
| 양 평 군 | 400 | 141 | 63 | 1 | 258 |
| 여 주 시 | 521 | 206 | 75 | 7 | 308 |
| 동두천시 | 633 | 225 | 73 | 9 | 399 |
| 가 평 군 | 489 | 252 | 190 | 5 | 232 |
| 과 천 시 | 93 | 46 | 19 | | 47 |
| 연 천 군 | 151 | 41 | 23 | 1 | 109 |

출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 3월말 기준)